

정보교환 중단신고서

신고인	사업자명	사업자등록번호		
	성명(대표자)			
	소재지(사업장)			
	연락처	전화번호	휴대폰	
팩스번호		전자우편		
정보교환 중단일	년 월 일			
중단 사유				
조치계획	※ 정보 폐기 처리계획, 인사조치 계획 등			

20 년 월 일 신고한 정보교환을 중단하였으므로 「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」 제50조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공정거래위원회 귀중

첨부서류	정보교환 중단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